

##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소집통보일자 : 2020. 4. 6

위원정수 : 7명

재적위원 : 7명

1. 일 시 : 2020. 4. 13(월) 14:00

2. 장 소 : 본 대학 205호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손화희(위원장, 교원), 서광적(교원), 유상기(직원),  
박다예(총학생회장), 황은정(대의원회의장), 왕수인(공연예술과 학회장),  
이동철(회계사) 이상 7명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안 건 :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 심의·의결

6. 회의내용

-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제31조 ③항 1. 「대학교육기관 :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·의결을 거쳐야 한다.»에 따라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음을 설명하고 참석하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.

-위원장은 안건으로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을 부의하고, 총무처 경리과장이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에 대한 보고서 및 각종 자료를 설명하다.

-위원들은 제출된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다.

-유상기위원이 유형고정자산현황에서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감소가 없는 이유를 묻자 경리과장은 2019회계연도에서는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폐기가 없어 결산상에 감소가 없었음을 설명하다.

-박다예위원은 코로나-19에 대한 방역비용 집행을 묻자 경리과장은 2019회계연도 회계에서 소모품비와 학생지원비에서 집행하였지만 2월부터 지역사회의 코로나-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주로 방역비용 및 안전용품 구입은 2020회계연도에 집행하고 있다고 말하다.

-이동철위원은 비등록금회계에서 대학과 평생교육원의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예산과 결산의 차액에 관련하여 묻자 경리과장은 비등록금 대학과 평생교육원간의 이월자금 내부거래로 차액이 발생되었음을 설명하다.

-검토를 마친 위원들은 의견을 나누고 서광적위원이 동의하고, 박다예위원의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.

-위원장은 위원들에게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-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

2020. 4. 13

위 회의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위원장 손 화 희 (인)

위 원 서 광 적 (인)

유 상 기 (인)

박 다 예 (인)

황 은 정 (인)

왕 수 인 (인)

이 동 철 (인)

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.

2020. 4. 13

송의여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장

송의여자대학교총장 귀하